

第 7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 97. 2. 13 ~ 2. 1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務部)會員交育燐能非肅忠 同訂 錄

殺 齋 會 齋 會 本

(H. S. - 81. S. 52)

會員交育燐能非肅忠

차

1997 • 2 • 통권 제52호

I.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3
II.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7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9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3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9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9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3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7

第7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開會式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2월 13일 (목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7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 의사과장 이흥무)

(11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이흥무

지금부터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03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2월 13일 (목요일) 11시 03분

議事日程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길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제73회-제1차]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1월 28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2월 4일 제97-2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2월 5일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정길위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4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위원 발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
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요일일 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

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2조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

[제73회-제1차]

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처리는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소 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당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정길위원 외 3인 위원이 발의하신 의안이므로 발의 위원을 대표하시어 김정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가 현실화 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동법시행령 별표6의 국내여비 지급 범위표 하단 비고3의 근거규정에 의거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 기준액을 개정된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를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본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 별첨4

(끝에 실음)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 역시 앞서 구성키로한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소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1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한 바대로 조일환, 김광수, 이근
수, 신용철, 이경운 이상 다섯분을 위원으로
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이 있는 충청북도교
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
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2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
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조일환, 이경운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조일환, 이
경운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 후부터는 조례심사소위원회의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제73회-제1차]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2월 14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길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금일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제73회-제2차]

따라서 금일은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부터 각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들으신 후 심 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
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
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 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 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경운간사께서는 나오 셔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간사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간사 이경운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이경운 교육위원 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 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 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비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지난 1월 28일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 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2월 1일 김정길위원 외 3인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어제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됨에 따 라 같은 날 회의를 갖고 3건의 조례안에 대 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 조례안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심사 보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 등을 조례안 별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 고 토요일일근무제의 실시근거 마련 등 기 타 현행 복무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전반을 통하여 볼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형 평을 기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 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교육감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

었습니다.

-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
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5
(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행 여비조례 제
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
에 따라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
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
지나 근거가 명확하고 국내여비 규정과의 형
평을 고려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
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
다.

-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
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6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할
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위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무원의 국내

여비 인상폭만큼 상향조정함으로써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
고 조례안 전반을 통하여 볼 때 근거법령에
충실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
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김정길위원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
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 별첨7
(끝에 실음)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면밀히 심사·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간사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별 심의에 들어가겠습
니다.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 간
사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
계관 및 발의 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

[제73회-제2차]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목,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5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6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7

(별첨1)

議 事 日 程(案)

第73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97.2.13~2.14.(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2.13(목) 10:00 11:00	☐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7. 2. 13 ~ 2. 14.(2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2. 14(금)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회	

(별첨1)

의안번호	제 73 - 1 호
의결 년 월 일	1997. . . (제 .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1 . 28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제 73 - 1 호
--------------	------------

제출년월일 : 1997. 1 . 28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안 제12조 제1항 단서·제2항 및 제15조의 2)
-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
-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안 제19조 제3항)
-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8호 및 제22조 제8항)

☐ 개정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 (대통령령 제15,244호, 1996. 12. 31)

☐ 조 례 안 : 덧 붙 임

☐ 참 고 사 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 붙 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을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제22조제6항중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를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의"를 "재직기간의"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 단서중 "1월이상"을 "30일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244호)

신 · 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11조(생략)		제1조~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중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 . 다만, 토요일의 중무시간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제15조(생략)		제13조~제15조(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토요일 일근무제) ①교육감은 국민 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 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 16조(생략)		제 16조(현행과 같음)																																																								
제 17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u>근속기간별</u>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 17조(연가일수) ① - - - - - <u>재직기간별</u> - - - - -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근 속 기 간</th><th>연가일수</th></tr> <tr> <td>3월이상</td><td>6월미만</td><td>4 일</td></tr> <tr> <td>6월이상</td><td>1년미만</td><td>7 일</td></tr> <tr> <td>1년이상</td><td>2년미만</td><td>10 일</td></tr> <tr> <td>2년이상</td><td>3년미만</td><td>13 일</td></tr> <tr> <td>3년이상</td><td>4년미만</td><td>16 일</td></tr> <tr> <td>4년이상</td><td>5년미만</td><td>19 일</td></tr> <tr> <td>5년이상</td><td>6년미만</td><td>22 일</td></tr> <tr> <td>6년이상</td><td></td><td>23 일</td></tr>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6년이상		23 일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재 직 기 간</th><th>연가일수</th></tr> <tr> <td>3월이상</td><td>6월미만</td><td>4 일</td></tr> <tr> <td>6월이상</td><td>1년미만</td><td>7 일</td></tr> <tr> <td>1년이상</td><td>2년미만</td><td>10 일</td></tr> <tr> <td>2년이상</td><td>3년미만</td><td>13 일</td></tr> <tr> <td>3년이상</td><td>4년미만</td><td>16 일</td></tr> <tr> <td>4년이상</td><td>5년미만</td><td>19 일</td></tr> <tr> <td>5년이상</td><td>6년미만</td><td>22 일</td></tr> <tr> <td>6년이상</td><td></td><td>23 일</td></tr> </table>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6년이상		23 일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6년이상		23 일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6년이상		23 일																																																								
②제1항의 <u>근속기간</u>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제1항에서 <u>재직기간</u>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 - - - - - - - - - - - - - -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 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 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생략)		제 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③(생략) ④(생략) 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신설) 제20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③(생략) 제21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⑤(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현행과 같음) ②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병가) ① - - - - - - - - - - - - - -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21조(공가) - - - - - - - - - -

현행	개정안
직접 필요한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7(생략) (신 설)	----- 1~7(현행과 같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생략)	9(현행 제8호와 같음)
제22조(특별휴가) ①~⑤(생략)	제22조(특별휴가) ①~⑤(현행과 같음)
⑥교육감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 ----- 장기재직휴가를 ----- ----- 재직기간의 -----
⑦(생략) (신 설)	⑦(현행과 같음)
	⑧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 30일이상 -----
제24조~제28조(생략)	제24조~제28조(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토요일전일근무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14)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6년이상	23 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14)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4)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 5.16)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14)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4. 5.16)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4. 5.16, 95.12.14)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7의 2.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5.12.1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5.12.14)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3. 2.24, 95.12.14)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5.12.14)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95.12.14)

⑦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4. 5.16, 95.12.14)

⑧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의안번호	제 73 - 2 호
의결 년 월 일	1997. . . (제 .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1 . 28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제 73 - 2 호
--------	--------	------------

제출년월일 : 1997. 1 . 28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247호, '96. 12. 31)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함.
(제2조)

☐ 개정근거

-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247호, '96. 12. 31.)

☐ 조 례 안 : 덧 붙 임

☐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 붙 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247호)

신 · 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u>가족이전비</u> 로 구분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 - - - - <u>일비</u> - - - - - <u>가족여비</u> - - - - -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조(준용)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발 채 서

□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247호, '96.12.31)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료·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

(별첨4)

의안번호	제 73 - 3 호
의 결	1997. 2. .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정길 교육위원 외 3인
제출년월일	1997. 2.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 3
----------	--------

발의년월일 : 1997. 2.

발 의 자 : 김정길교육위원 외 3인

☐ 개정사유

국내여비규정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7호)으로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제7조 및 제9조).
- 위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일비” 및 “숙박료”를 개정된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맞추어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안 별표 1).
 - 일 비 : 6,500원→10,000원
 - 숙박료 : 37,500원→41,000원

☐ 개정근거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7호)

☐ 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별표 1]의 현지교통비(1일당)란 및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 분	일 비 (1일당)	숙 박 료 (1야당)
의장 · 부의장	10,000	41,000
위 원	10,000	41,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247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제4조 (생략)	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u>현지교통비</u> , <u>숙박비</u> , 식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u>일비</u> , <u>숙박료</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 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위원회사무실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u>현지교통비</u> 를 제외한다)· <u>숙박비</u> 및 식비(3분의 1)를 지급한다.	② . (일비) · <u>숙박료</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9조(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u>현지교통비</u>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	① <u>일비</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비 임	숙박료	식비	
의 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정액	정액	
부의 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정액	정액	
위 원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정액	정액	
1.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별표 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표 생략)

비고 : 1~2 (생략)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247호, '96. 12. 31.)

제2조(여비의 종류) ①여비는 운임·일비·숙박료·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

제15조(지급) ①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이하 생략)

[별표 2]

여비정액표(제15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등 급	철도임	선운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정 등액	정 액	정 액	10,000	실 비	25,000
1 호	1등급	2정 등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2 호	1등급	2정 등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3 호	2등급	2정 등액	정 액	정 액	10,000	19,500	18,000
4 호	3등급	2정 등액	정 액	정 액	10,000	17,500	15,000

비고 : 1~4. (생략)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위 원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1.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
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첨5)

(제73회 임시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2. 1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7년 2월 13일

다. 상정일자 : 1997년 2월 13일(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7년 2월 1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토요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안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15조의2)
-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안 제19조제3항)
-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8호 및 제22조제8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 마련 등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전반을 통하여 볼때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의 형평을 기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았음.

6. 심사결과 :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6)

(제73회 임시회)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2. 1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7년 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1997년 2월 13일(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7년 2월 1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247호, '96. 12. 31)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행 여비조례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나 근거가 명확하고, 국내여비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았음.

6. 심사결과 :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7)

(제73회 임시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2. 1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7년 2월 1일, 김정길 외 3인 위원

나. 회부일자 : 1997년 2월 13일

다. 상정일자 : 1997년 2월 13일(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7년 2월 1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7호)으로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제7조 및 제9조)

○ 위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일비” 및 “숙박료”를 개정된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맞추어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안 별표 1)

- 일비 : 6,500 → 10,000원

- 숙박료 : 37,500원 → 41,000원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위원의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

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무원의 국내여비 인상폭만큼 상향조정함으로써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전반을 통하여 볼때 근거법령에 충실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았음.

6. 심사결과 : 김정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 7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 97. 2. 13)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初第)會員委員會第廿四屆

新樹審查委員會

(一九五九年)

忠新非議委員會

목 차

1. 제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3

2. 부 록

가.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나.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7년 2월 13일 (목요일) 14시 00분

의사일정 (제7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수
제가 연장자 같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돼서
원구성이 될 때까지 맡아서 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게 많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임시의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릴 것

은 없고, 바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경운

구두추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구두호천해서 결정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말씀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경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예, 하시지요.

● 위원 이경운

가장 연장자이시고, 수고도 제일 많이 해주실 분으로 회의도 가장 원만하게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되어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광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 신용철

예, 저도 임시위원장님이 계속 맡아 해주

시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그냥 임시위원장이 앉은 자리에서 해달라는 추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양보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여러분,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본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가 또 한분 있는데 간사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근수

위원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일환

이경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구두호천으로 하되 이경운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말씀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로 이경윤위원님을 선출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님 인사 한번 하시지요?

● 간사 이경윤

추천해 주신데 대한 인사로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그 일정안을 본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본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금일, 1일간으로 하여 본 소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바라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4시 07분)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전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복무조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아홉개 항목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첫번째가 토요일전일근무제의 근무시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전에는 토요일에 점심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점심시간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두번째가 토요일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를 원용해서, 복무규정이 아니라 복무조례 제13조를 원용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연가일수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1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성실하게 근무한 자한테는 인센티브(Incentive :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1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즉, 설명을 드리면은 병가가 없이 연가보상을 받지 못하는 연가잔여 일수가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 해에 각각 연가 1일씩을 더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반일연가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1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가를 하루 단위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일 단위로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시테크제(時Tech制)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1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간단위로 지참, 조퇴, 외출을 허용하는 겁니다.

여덟시간이 되면 이걸 하루로 계산하는 겁니다.

일곱번째는 병가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초과하는 일수만큼 연가에 산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19조 제3항입니다.

그리고 여덟번째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공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국제회의라든지 올림픽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공가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홉번째는 재해복구를 위해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신설해 두는 겁니다.

풍수해라든지 화재를 입었을 때에 휴가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금번 개정하는 복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한구절 한구절 낭독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까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신용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의문되는 사항을 돌아가면서 질문하는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좀 더 빨리하는 측면에서의 방법으로 오히려 이것을 한구절 한구절 죽 훑어 지나가는 것이 빠르지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때 나타나는 거대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고서 질문을 하면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이경윤

내용상으로 볼때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별 예상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을 보면서 질문)

● 총무과장 고일영

여러가지로 시의적절하게 도입돼야 될 것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테크제 도입이라든지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축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그 시테크제라고 하는게 그게 무슨 말예요?

● 총무과장 고일영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가령 외출이다 조퇴다 하는 경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달고 나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두시간이 되었던 다섯시간이 되었던 외출달고 가면 됐는데 지금은

그 외출시간을 총 합산을 해가지고 여덟시간이 되면은 그걸 연가 1일로, 연가 1일을 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테크제라는 것이 시간단위로 조퇴를 하던 지참을 하던 외출하던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할 것 같으면은 근무시간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걸 여덟시간으로 보는거 아니예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여덟시간을 보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 아홉시에 출근해 가지고 열시쯤해서 외출을 나갔는데, 그러면은 해전 안들어 온다해도 일곱시간 밖에 더 돼요?

● 총무과장 고일영

그렇지요.

● 위원장 김광수

나머지 일곱시간 말이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외출이 돼 버리지 그것이 연가로 될 수는 없지 않아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것이 지금부터는 그런걸 허용하지 않고, 여러번 외출을 하는 경우에 여덟시간이 넘으면은.....

● 위원장 김광수

그걸 합산을 해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걸 합산을 해가지고 연가 1일로 한다, 그런 얘데요.

● 위원장 김광수

오늘 것하고 내일 것하고 합산을 해서 열 시간이 넘으면은 그걸.....

● 총무과장 고일영

1년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아! 그런 거구먼요.

● 위원 이근수

여덟시간이 되면은 연가 하루를 깎다 그런 얘가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지요.

● 위원 조일환

조례안 전반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본 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보면은 제17조 제3항은 98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부분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면서 1년후에 시행을 해야 할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일반직 공무원이지요, 이번 에 이거는?

● 총무과장 고일영

아니지요,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위원 조일환

우리가 여기서 지방공무원이라 돼있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이라고 용어를, 그럼 우리가 교사를 지방공무원이라 합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교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는데 공무원복무규정하고 이 조례안하고 똑 같습니다, 내용이.

● 위원 조일환

아, 글썄 그래서.

아마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일반직에 한한 것 아니냐, 지방직이라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산하중에서도 국가공무원 따로, 지방공무원 따로 그래서 질문을 한거예요, 의의를.

그래서 일반 전문직 교사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예, 맞습니다.

● 위원 조일환

그럼 교사는 아니네요, 일반직에만 한하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 조일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요일일근무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향,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지금 토요일일근무제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실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라도 지금 시행을 하면서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다 말이지요?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심의를 받기 이전에.....

● 위원장 김광수

소급적용한다는 이런 얘기죠?

● 위원 조일환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교육부로부터나 또는 법령이 개정된 것이 지금보다도 상당히 전인데 지금 우리가 날짜가 지난 걸 심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 이렇게 단서를 달고 지금 시행해서 이것을 소급을 해서 발생하게 하고 발포를 한다면은 앞으로도 기간이 있는데 상당히 지난 것인데도 부칙에 어떤 경과규정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늦어 졌느냐, 교육부에서 언제지침이 내려오고 법령이 시달되고 언제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 위원장 김광수

아, 그것은 개정사유에.....

● 위원 조일환

아, 이런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지금 여쭙 보고, 축조심의할 때 제가 여쭙 볼게 또 있습니까라는 실무하시는 입장에서 의견은 어떤가 한번 여쭙 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아, 그래요, 축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개진을 한 것이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을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붙인 것은 제17조 제3항에 대한 것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17조 3항은 병가를 하루도 얻지 않은 분이나 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연가잔여일수가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하루씩을 가산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딴 건 이 1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내년 부터 하루씩을 가산해 주겠다, 요 조항만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 위원 조일환

예,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그리고 토요일근무제는 사실은 우리가 95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해 보라는 그런 지침을 받고 저희가 단계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6월달에 본청 총무과하고 연구원만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로 95년 10월에 본청에는 총무과, 초등교직과, 중등교직과, 공보담당관실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원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실시는 작년 96년 4월부터 했습니다.

본청은 전부서, 전과를 실시를 했고, 직속기관은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단재교육원, 학생회관, 학생종합야영장이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 시작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 확대 차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모두 확대해서 실시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사실 이게 토요일 오후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을 길로 봤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라든지 휴식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활동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자기개발한다든지, 또는 사회경제적 이용절감 효과를 노린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뜻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에 남아서 밀린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업무가 폭주하다보면 이일하라 저일하라 정신없을 때가 있는데, 조용하게 오후에 남아가지고 자기 일을 모두 정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통근비용을 없앤다든지 사무실에서 근무함으로써 해서 사무실 비용을 없앤다든지 하는 효과를 노린 건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측정은 안되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급 적용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좀 늦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 12월 31일날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교육 및 산하기관에 시달한 것이 97년 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이의 실시에 따른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금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일환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자세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아까 그 토요일날 전일근무제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잔무를 처리하는 그런 시간으로는 좋은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아니요?

● 총무과장 고일영

측정할 수는 없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공무원들이 한주 토요일 다섯시까지 근무를 하면 그 다음 토요일은 완전히 쉬니까, 이를 거꾸해서 일요일까지 쉬게 되지요.

그런 때에 여가 활용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확대해 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그랬는데 모두가 다 공무원 전체가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존속하는게 좋겠다는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조일환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여쭙겠는데 일반 지방직공무원은 계절에 따라서 아홉시 출근 여섯시 퇴근 그런가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 조일환

또 대개 전문직은 아홉시 출근 다섯시까지 근무 그렇지요? 계절관계 없이.

● 총무과장 고일영

지금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조일환

예, 학교.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환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게 일반직들이 소위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근무시간이 한시간 연장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별개의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나 보상은 없고 여기에 대한 그 일반직들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문제같은 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그거는 상당히 여러번 건의도하고 불만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일반직이라고 해서 그 일반직만 타부서를 의식하지 않고, 학교에 있는 일반직을 교원과 유사한 취급을 할 수 없다라고 중앙에서 해서, 사실은 교원과 같이 퇴근시간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일환

자체내로 우리 규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 총무과장 고일영

예,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어떻게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본안에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쪽을 펴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2조,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이거는 종전과 같지 않은가요?

● 총무과장 고일영

아닙니다. 종전에는 없던 사항을 넣은 겁니다.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퇴근시간 17시로 하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3시로, 13시는 종전대로 13시입니다만,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할 때는 토요일 퇴근시간이 17시라 하는 것을 여기다가 삽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것이 1항이지요? 지금 제가 낭독한 것이 1항에 들어 있는거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2항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 전에는 안들어갔었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같은 거고, 다음에 제15조의2 제1항 “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교육감의 시행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거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거기 2항에 “토요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거기 혹시 이제까지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른 설명 더 안들어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조는 현행과 같고, 제17조 연가
일수 제1항 “재직기간별 3월미만 6월이
상.....

● 총무과장 고일영

그것은 다 같은데요, 문구만 조정을 했습
니다.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이라고 바꿨습니
다.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은 차이가 있습니
다.

근속기간은 공무원이 20년을 근무했다 하
면은 중간에 있는 실업, 휴거 이런 거는 빼
고, 계속 근무한 것만 근속기간이라 하는데
재직기간이라는 것은 설혹 쉰 기간이 있다하
더라도 종전에 한 것까지 다 합친 근무연수
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유리하게 된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공무원한테는 유리하게 된 거구먼, 그 다
음 제2항에 들어가서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
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했는
데, 내내 그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바뀐
거고, 제23조 제1항을 과장님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그거는 연금법인데요.

● 위원 조일환

그거는 그러니까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한
계를 뜻하는 거겠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중간에 쉰기간이 있다하
더라도 이걸 다 합산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군대갔다 온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금법에는 다 합산하도록 돼있는
데, 그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법을 보면서)

공무원연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 제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
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의 연월수에 의한다.” 다음, 2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
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
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
는 제외한다.) 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
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
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음, 2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

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 위원 조일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제17조 3항으로 가서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제1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제2호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조금 더 설명을.....

● 총무과장 고일영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은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겁니다.

병가를 단 하루도 받지 않은 공무원은 다음해에 하루를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호는 연가를 6년이상 근무하면 23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만 연가를 내고 20일을 연가를 내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가보상비를 20일치를 주기 때문에 20일치를 다 탑니다.

그런데 3일을 내지 않고 단 이틀밖에 연가를 내지 않았다 그럴때 이틀밖에 연가를 안 냈기 때문에 21일치의 연가보상비를 사실 받아야 되는데, 법으로 20일치까지 밖에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연가보상비를 못하고 연가를 내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하루를 갖다가 다음 해에 연가일 수 하루를 산입을 해주겠다 그런 애깁니다.

● 간사 이경윤

그러니까 불이익은 하나도 안주겠다 이런 얘기여, 아주 정확하게 찾아 먹도록 하는 구먼.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제17조는 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조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18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제3항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3항과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적용을 한다하는 말씀 같으네요.

(“좋아졌네, 뭐.”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일반직에만 해당이 되고 전문직이나 선생님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고일영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은 18조는 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조로 들어가겠습니다.

● **간사 이경윤**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말이죠, 18조 3항에 이렇게 반일까지 찾아주는데 여기 무슨 문제점은 없어요?

● **총무과장 고일영**

이것도 아주 잘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반나절밖에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과거에는 반나절이 필요해도 하루를 냈어요, 그냥.

그런데 오후에 별 볼일이 없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가냈으니 나오지 말자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반일 연가를 실시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도 편리하고.

● **위원 조일환**

반대로 악용할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으면 토요일날 내가 반일연가를 낸다하면은 하루가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 **총무과장 고일영**

아, 그게 토요일일근무제를 하기 때문ですよ.

● **위원 조일환**

아, 그렇지요, 맞아요.

(장내 웃음)

● **총무과장 고일영**

자기가 근무조인데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연가처리를 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광수**

잘된거 같네요.

그럼 제19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또 3항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 3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고일영**

병가를 1주일이상하려면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6일이하는 진단서를 첨부안해도 병가를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5일씩 나눠가지고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조치안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는데서 공제하지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없이 그냥 며칠씩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병가를 활용하는 사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
들은 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이제까지는 6일이하를 병가를 한
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의사 진단없이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한 5일정도 또 이렇
게.....

● 총무과장 고일영

실제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마는
혹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 위원 이근수

특히, 학교같은데는 입학기라든지 졸업시
즌 그런 때에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가? 규
제하는 뭐는 없는가요?

● 총무과장 고일영

그런거는 없습니다.

● 위원 이근수

이제 고의적으로, 조금 뒤틀린 얘기지만 교
장·교감들에게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
들이 학교의 일을 좀 뭐라고 할까, 제대로
운영 못하도록 하는 이런 뜻에서 병가, 연가
를 연속해서 낸다든지, 좌우지간 이런 때
에.....

● 총무과장 고일영

연가에서 까졌다는 얘깁니다.

● 위원 이근수

까지마는, 그런 때 가서 일부러 연가를 낸
다든지 하는 시기적으로 행사가 관계하는 이
런 문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공무원이 사실 그래서는 안됩니다마는, 꼭
필요한 때 고의적으로 나 아프다고 못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안해야 되는데요,
달리 막을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근수

그런 거는 사실, 행정감사도 하고 여러가
지 감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감사대상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말씀드리면, 병가든 연가든 모두 기관장
허락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기관장이 병가를 내겠다고 하면, “너 어디
아프냐” 그런 식으로 자세히 물어 보고, 아
니면은 “바쁘는데 이런 때에 병가낼 수 있느냐,
좀 어렵더라도 나와서 해달라” 독려하는
식으로 해야지, 정말 아파가지고 병가를 내
겠다고 하는 사람을 기관장이 그걸 속을 들
여다보고 너는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건 운영을 피차간에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렇게 해서 19조는 넘어가고, 제20조에 1항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도 또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네.

(장내 잠시 침묵)

● 위원 신용철

그거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니까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여.

● 위원장 김광수

연가에서 공제하니까 병가에서는 공제하지 말어라, 그리고 병가는 60일이상 안봐주게 돼있어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그 어떤건 6개월두, 이건 그게 아닌가.....

● 총무과장 고일영

그 지병일 때, 공무상으로 질병이 났을 때 이런 때는 2개월이 아닙니다.

전체 다 됩니다.

● 위원 조일환

사실, 병가라는 문제는 현장에서는 일반직에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사실은 전문직에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기휴가나 휴가 이것을 해서 전후하고, 60일이내 그럴적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60일 정도 병가를 내서 길게는 넉달 정도 병가를 내서 몸을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아주 장기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선생님이 근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직장에 피해를 주고 있지요.

그래도 이것을 병가·연가에서 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은 20조는 그렇게 이해가 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1조 공가, 공가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호에서 7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8호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제9호는 제8호의 현행과 같습니다.

공가라고 할거 같으면은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요기간은 명시가 안됐는데요, 여기에.

● 총무과장 고일영

행사에 참가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올림픽이면 올림픽 기간, 전국체전이면 전국체전 기간?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 조일환

여기는 별문제 없겠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 조일환

국가적인 행사라면 국가적인 행사는 어떤 정의가 있겠죠?

● 총무과장 고일영

지금까지는 공가개념에 올림픽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공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이와 유사한 국가적인 행사에는 공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지금 제8호가 신설된거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환

국가적인 행사라는 범위를 여기서 제시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공무상의 국가적인 행사라는 범주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광수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거란 말이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신설된 거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갔을 적에 출장비를 못쫓던가요?

● 위원 조일환

출장은 달아줘요.

● 간사 이경윤

출장은 달아서 보내줬는데, 공가를 내줄 수가 있고, 안내줄 수가 있고.....

● 총무과장 고일영

복무예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나온건데, “행사 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의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급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소속기관에서?

● **총무과장 고일영**

예.

(위원 모두 잠시 침묵)

● **위원장 김광수**

21조는 이렇게 넘어가고 22조에 특별휴가, 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에 가서 “교육감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거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그것은 뭐 문제될게 없겠네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7항은 현행과 같고, 8항에 그 신설된 겁니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뭐 더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대로.

그 다음에 제23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1월이상”이 “30일이상”으로 바뀐거 뿐이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월이라고 하면 2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한데, 이거를 30일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인제 일요일같은 거라든가 국경일같은 것은 휴가일수에 빠진다는 애긴가요?

● **총무과장 고일영**

30일이상일 때는 넣는거죠.

● **위원장 김광수**

글쎄, 30이상일 때는 넣는데, 29일이하일 때는 일요일이라든가 그걸 빼고서 한다는 거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전부 이해가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조부터 28조는 현행과 같고, 부칙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그 적용례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제까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거 계신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환

예, 지금 저 심의한 거 중에 제21조에 아
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이
것은 사실 일반직은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전문직, 교사있잖아요.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유명하고 능력있는 선생님은 우
린 좋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게 전
국체전이다, 무슨 미술경연이다 다반사로 빠
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이나 이게 신설이니까 정확
하게 되어야 되는데, 직장에 장이 있다해도
“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가겠습니다.” 하
면 못가게 하는 방법도 없고, 이럴 때 어떤
일정한 국가적인 행사라는 개념내지는 “단,
연간 뭐”라든지,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든지 이렇게 없다면, 국가적인 행사
라는게 무수히 많습니다. 거기다 붙인다면
은 이 용어가 국가적인 행사라는, 자유롭게
국가적인 행사에 동참을 하라는데 이게 일선
에 나가면 그래요.

능력있는 선생님 안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국가적인 행사” 개념이 어떻게 봐야되느냐,
그게 어떻습니까?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는 참 싫어합니다.

선생님들 맨날 뛰어 나가고, 중등같은데는

과목이 다 있지 초등에는 전교과인데.

● 위원장 김광수

초등에 있어서 더 그렇지요, 그 반을 다
비우고서.....

● 위원 조일환

예, 그렇습니다.

맨날 비우고서 보충수업하고.....

● 위원장 김광수

미술을 잘하는 선생이라고 하면 미술경진
대회 나간다던가 뭐에 나가서 수업일손을 빼
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건데, 그거 뭐 공가로
다가 인정을 하도록 신설을 했네, 우리가 그
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 위원 조일환

이거는 도의회에서 한번 안짚을까.....

● 위원장 김광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 앞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조례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개정조례안에 이의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한시간이 더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빨리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15시 16분)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교적 내용이 간단함으로 집행청 관계관의 설명은 생략을 할까요?

(“예, 그러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의안 제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조가 목적이 되는데, 목적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여비의 종류인데,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 총무과장 고일영

사실은 이게 조례안에만 규정이 있고, 저희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같이 이사를 해야 된다면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주도록 돼있는데, 이건 예산형편상 하나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럼, 전근이 돼서 이사해야 된다고 할적에 그때 해당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고일영

몇 킬로까지는 얼마를 주고, 몇 킬로까지는 얼마를 준다고 하는 법적근거는 돼있는데, 지금까지 지급은 단 한번도 해본일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 간사 이경윤

그러면 이 가족여비라고 하는걸 빼버리면 어때요?

● 총무과장 고일영

아, 이제 언젠가는 예산사정이 좋아져서 지급하게 되면은.....

● 간사 이경윤

아, 없는걸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공무원 간에 서로 말썽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 위원 신용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틀이기 때문에 되
야 돼요.

●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에 의무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하거
나 근무를 명령받아 가게 될 때는 가족을 동
반하게 되면 가족여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고일영

해외유학갈 때는 줍니다.

● 간사 이경윤

그럼, 빼면 안된다?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간사 이경윤

그럼 우리 국내에는 지금까지 실시한 일은
없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간사 이경윤

그래, 이 대학같은 데서는 이런걸 혜택을
받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대학도 아마 없는걸로 아는데요.

● 간사 이경윤

대학의 교수가 타국으로 갈때 가족이 함께
떠날 때.

● 총무과장 고일영

타국으로 갈때, 이런 때에는 해줍니다.

● 간사 이경윤

그것 때문에 이걸 지을 수가 없다는 것 아
녀, 그것 때문에.

● 총무과장 고일영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건 또 국외여비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것이 국내에서 그 이사할 때
전근이 돼서 같이 가족을 동반할 때 줄 수
있는 그 기준만 마련만 해놨지, 예산이 없어
서 사실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조일환

이게 주기로 말하면 정기이동 또 월, 분기
별 이동하면 대단할걸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대단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우리 자치단체 형편으로 볼적에 영동에서
단양으로 전근이 됐다든가 할적에 이런 것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이 됩니다.

● 간사 이경윤

뭐하러 이런 걸 만들어 놔서 굶어부스럼이
되는 거 아니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아닙니다.

근거조차 없앨 필요는 없고요, 놔두고 나
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지급할 수도 있고 하
는 거니까요.

● 위원장 김광수

이게 그렇다면은 이 규정에 돼있는데, 어

는 선생님이 영동에서 단양으로 전근발령을 받아서 간다고 할 적에 이걸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안줄 수는 없겠네요?

● 총무과장 고일영

못 주지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장내 웃음)

● 간사 이경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 여기 여비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안줍니까?”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다면 정말 복잡해지지요.

● 간사 이경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와서 굵어부스럼을 만드느냐 이거죠.

● 위원 조일환

아니, 이건 과거에도 가족이전비는 있었는데 용어를 이번에 가족여비로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고.

● 간사 이경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없는건지도 몰랐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괜히 굵어부스럼 만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상사와 부하간에 갈등요인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가네요.

●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이 2조에는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이렇게 용어만, 문자만 고친거예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시고, 제3조는 전예와 같고, 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여기에 이의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역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이하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

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내용이 비교적 단순함으로, 관계관의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의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련 의안 제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현행과 같음으로 생략을 하고, 제5조에 여비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항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자구를 수정을 하는거네요.

거기에는 별 이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6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이견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원격지회의 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로부

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 일비를 제외한다.) 숙박료 및 식비(3분의 1)를 지급한다.” 거기도 뭐 다른 말씀 안계시지요?

● 위원 신용철

있어요, 있어.

● 위원 이근수

여기 말이지요, 편도거리 60킬로라는 건 중앙에서 정해 갖고 나온거요?

아니면 도에서 정한건가요?

● 의사과장 이흥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난 번에 교육위원의 정활동비하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이미 명시가 돼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이근수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고칠 수도 있는 건가?

● 위원장 김광수

이것이 말이지, 먼저 이 정관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고쳤어요.

개정을 했는데, 그 정관을 고칠적에 어떻게 고쳤느냐, 도의회의 정관 그대로 고친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우리도 그런데 왜 너희들 그렇게 하느냐” 해서 통과가 안돼요.

● 위원 이근수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도의회도 그렇게 고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될거 아니요?

(장내 웃음)

●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8조는 현행과 같고, 제9조에 가서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에서, 여기도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바뀌었구먼요.

그 다음에 10조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별표의 신규조문대비표가 돼있는데 거기 보면은 1일 6,500원인 것이 일비로 해서 만원이 됐고, 숙박비로 숙박료라고 해서 3만 7,500원이던 것이 4만 천원으로, 그 내용이 고쳐졌습니다.

● 위원 이근수

이것이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요?

● 의사과장 이흥무

예, 지난번 2월 5일날 134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우리 교육위원회 여비규정의 조례는 교통비를 일비라고 한거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거 이것만 바뀌고, 지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1일교통비 6,500원을 만원으로 하고 숙박료가 3만 7,500원이 4만 천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역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의 조례안을 아주 진지하고 심도있게 이와 같이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침과 아울러 본 소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산회)

0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경운, 조일환, 이근수, 신용철.

0 출석공무원 : 3인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총무과장 고일영, 의사과장 이홍무.

0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별첨 1

0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 별첨 2.

0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 별첨 3.

0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 별첨 4.

0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별첨 5.

0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별첨 6.

0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별첨 7.

(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議事日程(案)

第7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考
1996. 2. 13. (木) 14:00~	●第1次 小委員會● 1. 開會 2. 委員長 選任의 件 3. 幹事 選任의 件 4. 小委員會 議事日程(案) 5. 忠清北道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忠清北道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7. 忠清北道教育委員會教育委員議政活動費等의 支給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散會	

